

조선시대 수령의 소송지침서 『詞訟類聚』의 편찬과 활용

A Study on Compilation and Utilization of Litigation Guidelines Called *Sasongyuchi* for Local Magistrates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김 명 화 (Kim, Myeong-hwa)*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2 임진왜란 이후 |
| 2. 『詞訟類聚』 간행 배경과 체제 | 4. 수령의 『詞訟類聚』 활용 사례 |
| 3. 『詞訟類聚』 판본 현황과 특징 | 5. 맺음말 |
| 3.1 임진왜란 이전 | <참고문헌> |

<초 록>

이 연구는 조선시대 가장 널리 알려졌고 지속적으로 유통, 재생산되었던 『詞訟類聚』를 중심으로 그 간행 배경과 체제를 살펴보고, 『사송유취』의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 板本을 통해 간행 현황과 판본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았다. 또한 이렇게 재생산된 『사송유취』를 守令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각종 고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사송유취』는 1585년全州에서 金泰延에 의해 木版本으로 간행된 이래 임진왜란 이전 전주에서 또 木活字本 『決訟類聚』로 간행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刊行地는 알 수 없으나, 전주 『사송유취』와는 별개의 판본이 여러 차례 補板을 넣어가며 간행되었다. 그리고 목활자본 『결송유취』를 代本으로 간행된 永川 『결송유취』도 간행되었다. 이들 판본에 대한 간행 시기는 사료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문의 藏書印, <大明年紀>, <本朝年紀>, 刊記 등을 통해 유추하였을 뿐이다. 이와 함께 『사송유취』가 국가의 법전과 왕의 명령으로 만든 법전 모음집에 인용된 것으로 보아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소송지침서였음을 알 수 있었고, 朴泰輔의 序文과 丁若鏞의 守令 赴任, 관청의 重記를 통해서 수령이 『사송유취』를 임기 중에 읽고, 소송에 참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사송유취』는 1585년 『사송유취』가 간행된 뒤 『결송유취』와 『決訟類聚補』가 뒤이어 간행되었다는 간단한 흐름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사송유취』의 경우 標題의 변화만으로 간행의 변화를 추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간행된 횟수도 많았고 판본 또한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후 『사송유취』가 처음 간행되기 전에 영향을 받은 다른 책이나 판본과 간행되고 변이되어 재생산된 판본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要語: 사송유취, 결송유취, 소송지침서, 전주, 영천, 수령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박사과정(audrlaghk@naver.com)

접수일: 2016년 6월 10일 최초심사일: 2016년 6월 14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25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publication and the system of *Sasongyuchi* (詞訟類聚), which was most widely known and continuously distributed and reproduced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to look into changes in publication status and the version of *Sasongyuchi* before and after the Imjin War. I have also examined how local magistrates nationwide used *Sasongyuchi* reproduced in this manner based on records in old literatures. *Sasongyuchi* was published again as a book printed using wooden movable type called *Gyeolsongnyuchi* in Jeonju before the Imjin War following its initial publication by Kim Tae-jeong as a xylographic book in Jeonju in 1585. Several woodblock-printed books attached with supplementary manuscript apart from *Sasongyuchi* in Jeonju were published after the Imjin War although its place of publication is not known. Yeongcheon *Sasongyuchi*, which was a script version of the wooden type book *Gyeolsongnyuchi* was also published. The periods of publishing these woodblock-printed books have been estimated based on the reference of the ownership stamp in the body, 'Daemyeongnyeongi', 'Bonchonyeongi', Gangi etc. since they were not mentioned in historical sources. Along with these, it has been identified that *Sasongyuchi* was quoted in national law books and law book collections created by the king's command, which confirms that it was an official litigation guidelines used in practical purposes and that local magistrates nationwide read *Sasongyuchi* during their term in office and used it as a reference material for actual litigation cases based on the preface of Park Tae-bo, Jeong Yak-yong's appointment as a local magistrates and official records of government authorities. The brief introduction of *Sasongyuchi* has been presented from its initial publication in 1585, followed by its revised and complementary versions of *Gyeolsongnyuchi* and *Gyeolsongnyuchibo*. When it comes to *Sasongyuchi*, however, it is not easy to estimate the change of its publication based only on the change in its title and presumably there were many occasions of its publications along with the presence of its multiple copies. Therefore, further researches into books or manuscripts that influenced the initial publication of *Sasongyuchi* and its revised and reproduced versions will be required in the future.

Key words: *Sasongyuchi*, *Gyeolsongnyuchi*, litigation guidelines, Jeonju, Yeongcheon, local magistrate

1. 머리말

조선시대 재판을 담당했던 수령들은 전문적인 법률가가 아니라 유교적 교양을 쌓은 사대부였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해야 했다. 조선전기 간행된 법전인 『經國大典』은 독립된 형률이 마련되지 않고 중국의 『大明律』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이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다양한 시행체칙과 국왕의 受敎 등이 내려지며 이를 정리한 『大典續錄』·『大典後續錄』 등이 간행되면서 수령이 참고해야 할 법전은 점점 늘어났다. 이런 법전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기 위한 하나의 종합적인 간행물이 필요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적인 간행물은 이런 법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 아니라 수령이 재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편집된 간행물인 소송지침서 곧 詞訟法書를 말한다. 이는 현재 『詞訟類抄』·『詞訟類聚』·『大典詞訟類聚』·『決訟類聚』·『決訟指南』·『決訟類聚補』·『聽訟指南』·『司訟錄』 등이 현전하고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간행물은 『사송유취』이며, 이와 동일계열로 標題가 『詞訟錄』·『詞訟類抄』·『決訟類聚』·『決訟指南』 등인 책들이 있다. 본래 『사송유취』 목판본은 본문 첫 장에 권수제가 드러나지 않고, 발문에도 ‘決訟, 聽訟, 爲聽訟者之指南’이란 단어만 나타나지 ‘詞訟’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 권수제가 나타나는 것은 『결송유취』 목활자본부터이며, 따라서 표제가 위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판본의 판심제를 살펴보면 모두 ‘詞訟類聚’ 또는 ‘決訟類聚’로 나타난다. 이는 지칭이 詞訟이 決訟으로 바뀐 것으로 그 내용상에 변화는 없다. ‘詞訟’은 민사 소송, 민사 사건이란 뜻으로 조선시대 守令七事에 ‘詞訟簡’이라는 항목이 있듯이 수령의 군현통치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민사 소송의 지침서로써 『사송유취』는 처음 ‘詞訟’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決訟’은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소송을 결정하여 판결한다는 뜻으로 이는 수령이 『결송유취』를 통해 주체적으로 민사 소송을 결정하고 판결한다는 의미를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詞訟’이란 단어가 『詞訟錄』·『大典詞訟類聚』·『詞訟類抄』 등 다른 사송법서의 표제에 많이 중첩되어 사용되는 면도 있었기 때문에

『사송유취』를 改題한 『결송유취』로 바꾼 듯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송유취』와 동일계열인 『결송유취』까지의 판본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사송유취』에 대한 연구는 처음에는 주로 법사학에서 연구가 되어 왔다. 1964년 법제처에서 『사송유취』 역주본이 나왔고,¹⁾ 이후 법전의 편찬 변화를 설명하며 소송법전으로 언급되었고, 訴訟法典 또는 詞訟法典으로 연구되었다.²⁾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사송유취』·『결송유취』·『결송유취보』를 영인하여 출간하였고, 이때 정구복의 해제를 통해 처음 판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³⁾ 서지학에서는 전주의 출판문화를 연구하며 언급되었다. 옥영정은 호남지방의 목활자본을 연구하며, 전주의 목활자본으로 임진왜란 이전에 ‘全州 甲寅字體 木活字’로 인쇄된 『결송유취』에 대해 연구하였고, 김소희는 전라도의 출판문화를 연구하며, 책 판목록을 중심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전주 목판본으로 『사송유취』를 연구하였다.⁴⁾ 이처럼 『사송유취』에 대한 연구는 법사학에서 내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판본에 대한 연구는 한중연의 영인본 출간에서 정구복의 해제를 통해 처음 시도되었다. 이후 임진왜란 이전의 출판으로 목활자본 『결송유취』와 전주 『사송유취』가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조선시대 내내 가장 널리 알려졌고 지속적으로 유통, 재생산되었던 『사송유취』를 중심으로 그 간행 배경과 체제를 살펴보고, 『사송유취』 임진

1) 법제처 편, 『(原新補) 受教輯錄·詞訟類聚』(법제처, 1964).

2) 김재문, “조선왕조의 민(형)사소송법전(사송유취),” 『재산법연구』 제8권(1991. 12), 35-53.; 김재문, “조선왕조의 소송법전(사송유취),” 『재산법연구』 제11권(1994. 12), 87-130.; 연정열, “사송유취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논문집』 20집(1996), 47-58.; 정궁식, 임상혁, 『十六世紀詞訟法書集成』(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9); 임상혁, “朝鮮前期 民事訴訟과 訴訟理論의 展開,”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정궁식, “법서의 출판과 보급으로 본 조선사회의 법적 성격,” 『서울대학교법학』 제48권(2007. 12), 88-123.; 정궁식, 조지만, 다나카 토시미즈, 『잊혀진 법학자 신변 - 譯註 大典詞訟類聚』(서울: 민속원, 2012).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편, 『韓國學資料叢書八 - 決訟類聚補』(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4) 옥영정, “호남지방 목활자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2);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제50집(2011. 12), 433-470.; 김소희, “조선전기 전라도의 출판문화 연구,” 『서지학연구』 제62집(2015. 6), 357-392.

왜관 이전과 이후 판본을 통해 간행 현황과 판본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렇게 재생산된 『사송유취』를 수령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각종 고문헌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詞訟類聚』 간행 배경과 체제

『사송유취』는 조선시대 민사소송인 詞訟의 처리에 참고가 되도록 필요한 법령을 편집한 소송지침서이다. 安山郡守를 지낸 金伯幹(1516-1582)⁵⁾은 『대명률』·『경국대전』·『대전속록』·『대전후속록』·『경국대전주해』·수교 중에서 사송에 필요한 조문을 뽑아서 분류해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 이 책을 贊成 沈希安(沈守慶, 1516-1599)⁶⁾이 교정하였고 이후 간행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뒤 김백간의 아들 金泰廷(1541-1588)⁷⁾이 전라도관찰사로 재직할 당시인 1585년(선조 18)에 전주에서 간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光州牧使 丁炤(1524-1609)⁸⁾과 김백간의 아들인 전라도관찰사 김태정의 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金侯伯幹은 일에 방심함이 없더니 군현의 수령이 되어서는 더욱 공평하게 판결하는데 조심하여 일찍이 決訟에 필요한 要覽을 뽑아 모아 판결에 편리하게 하니, 소송을 처리하는 자[聽訟者]의 지침[指南]이 될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5) 金伯幹(1516-1582): 본관 광산, 자 而述. 아버지는 金文瑞, 할아버지는 金克愼, 처는 明原君 李顯의 딸이다. 利仁道察訪과 安山郡守를 지냈다.

6) 沈守慶(1516-1599): 본관 풍산, 자 希安, 호 聽天堂. 1546년(명종 1)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1552년부터 검상, 직제학을 거쳐 뒤에 대사헌과 8도 관찰사를 역임하였으며,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7) 金泰廷(1541-1588): 본관 광산, 자 亨彦. 일찍이 李滉의 문인들과 교유하며 건문을 넓혔다. 1581년(선조 14) 3월 제주목사로 부임했다가 1582년(선조 15) 8월 부친상을 당해 제주목사직을 사퇴했다. 1585년(선조 18) 5월부터 1586년 2월까지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했고, 이후 형조참판에 올랐다.

8) 丁炤(1524-1609): 본관 창원, 자 君晦, 호 晩軒. 1580년 영광군수 때 林氏와 羅氏 사이에 소송사건이 있었는데, 명석한 재판을 진행하여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1584년 光州牧使를 지냈다.

사람이 법의 뜻을 알게 되어 그 讞訴를 함부로 하지 않게 되면 또한 거의 쟁송을 그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제 監司가 그 아버지의 모아둔 책을 읽고 一路에 시행함에 여유가 있었고, 임기가 만료하여 돌아가게 됨에 完山에서 출판[刊板]하게 되었으니, 또한 그 아버지의 뜻을 잘 이었다고 하겠다. 나에게 그 전말을 적으라기에 여기에 써 둔다. 1585년(선조 18) 동짓달 광주목사 정엽은 삼가 발문을 쓴다.⁹⁾

옛날 아버지께서 손수 『대명률』·『대전주해』·『전속록』·『후속록』과 各年の受敎 등의 책 중에 決訟에 대한 중요한 말[要語]을 한 권의 책을 만드시고 贊成 沈希安의 교정을 받아 항상 刊行하기를 원하시더니 성취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니 아버지의 손때가 아직 남아있구나, 슬프다. 各項의 法條文을 分門하여 聚類하였기 때문에 一目瞭然할 뿐만 아니라 ‘使孫圖’라든가 ‘聽訟式’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더욱 환하게 밝아서 진실로 책상 위에 두었다가 마음에 의심되는 곳이 있어 곧 찾아보면 判斷하는데 도움 됨이 자세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하물며 소송을 심리하여[聽訟]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워 복종하게 되어 마침내는 소송이 없어지기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책이 반드시 階梯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니, 어찌 사사로이 감춰 두고 널리 분포[廣布]하지 않으리오. 이에 전주 부윤[府伯]에게 부탁하여 工匠을 고용하고 판목을 새기니[鋟梓] 판아에 앉아 판결하는 이들과 더불어 이 책을 가지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585년 동짓달 15일 가전대부 전라관찰사 김태정은 삼가 쓴다.¹⁰⁾

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송유취』를 간행하기 전에 김태정이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여 아버지 김백간의 원고를 읽고 소송 처리에 활용하였으며, 임기가 만료될 때 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김태정은 『사송유취』에

9) 『晚軒先生文集』 卷2 「司訟錄跋」.

“金侯伯幹，於事不放過，其爲郡縣，尤致謹於平反，嘗哀集決訟要覽，以便剖判，不惟爲聽訟者之指南，使人人得見法意，不肆其誣，則亦庶幾息爭訟之方矣。今監司泰廷，讀父書，試之一路而有裕，瓜滿將歸，刊板完山，亦可謂能繼其志矣。請余誌其顛末。於是乎書。萬曆乙酉仲冬。光州牧使丁焰謹跋。”

10) 『詞訟類聚』 중 김태정의 跋文.

“昔我先君手抄『大明律註解』·『前·後續錄』·各年受敎等書，決訟要語，編爲一卷，讎校於沈贊成希安，令公常欲刊行，未就而下世，手澤尙新，嗚呼痛哉。非但各項法條分明類聚，一舉目而瞭然，至如使孫之圖·聽訟之式，尤灼然明甚，苟置諸几案上，心有所疑，卽爲考據，則判斷之際，不無所補也審矣。況聽訟而辨其曲直，使民畏服，終至於無訟者，此吾先人之志也。而未必非此書爲之階梯也，則其私藏而不廣布乎。茲屬府伯，倩工鋟梓，思與坐黃堂剖決者共之。萬曆紀元乙酉歲日南至之望。嘉善大夫全羅道觀察使金泰廷謹書。”

대해서 법조문을 分門하여 類聚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고 그중에서도 ‘使孫圖’와 ‘聽訟式’을 제일로 들고 있다. 그리고 간행에 대해 전주부윤에게 부탁하여 간행했으며, 이는 관아에 앉아 판결하는 이들 곧 수령들과 더불어 공유하기 위함을 명시하고 있다.

『사송유취』의 구성을 살펴보면 “相避・斷訟・聽訟・親着・決訟日限・禁制・僞造・贖身・陳告・停訟・屬公・買賣・買賣日限・徵債・立後・奉祀・鄉役・免役・功臣・惠恤・婚嫁・驛路・公賤・私賤” 등 24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이는 경국대전의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이라는 기관별로 업무에 따른 조항을 분류하는 육전체제를 탈피하여 주제별로 같은 주제에 속하는 법조문을 뽑아서 항목을 나눈 것이다. 각각의 조문은 『경국대전』・『대명률』・『대전속록』・『대전후속록』・수교의 순서로 인용하였다. 이는 결국 주제별 조문으로 여러 법전의 조문들을 모아 실었지만 그 인용에 있어서는 일정한 祖宗成憲을 따른 것이다.¹¹⁾

『사송유취』에 인용된 법전에 대해 살펴보면, 『경국대전』은 1485년(성종 16)에 반포되었고, 『대전속록』은 1491년(성종 22)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집하여 편찬한 법전이며, 『대전후속록』은 『대전속록』의 시행 후 1542년(중종 37)까지의 약 50년 간의 현행 법령을 수집하여 편찬한 법전이다. 『경국대전주해』는 『경국대전』의 규정 중 해석하기 어려운 조문이나 용어를 주석한 책으로 1554년(명종 9)에 완성되었다. 『사송유취』에 인용된 수교의 상한은 1547년(명종 2) 6월 1일 수교이며,¹²⁾ 하한은 1577년(선조 10) 6월 26일 수교이다.¹³⁾

다음은 『사송유취』의 본문에 인용된 법전의 인용 횟수를 간략히 알아보기 위해 인용 법전을 표시한 墨蓋子의 개수를 나열한 것이다.

11) 정공식, 임상혁(1999), 43.

12) 『詞訟類聚』「惠恤」.

“[受教] 貧民等各其小兒不能自有, 遺棄必多, … 嘉靖丁未六月初一日.”

13) 『詞訟類聚』「斷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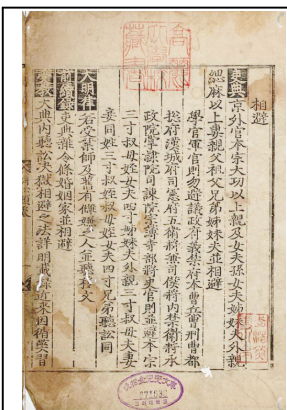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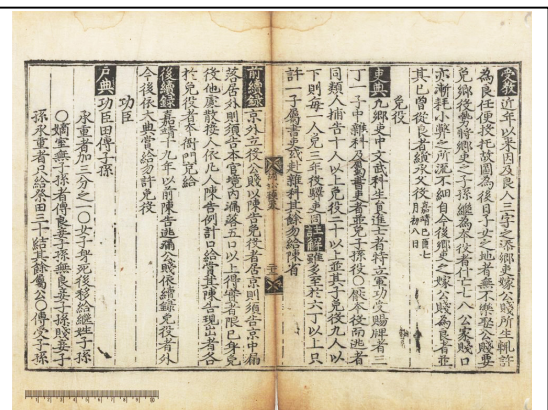
“[受教] 大臣議田宅條, 卽立限而曰, 奴婢同, … 萬曆五年六月二十六日, 刑曹斥正後.”

<표 1> 『사송유취』에 인용된 법전의 인용 횟수와 백분율

법전	경국대전	대명률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경국대전주해	수교	합계
인용 횟수	이전 3	5	14	20	18	25	117
	호전 6						
	예전 5						
	형전 21						
	35						

<표 1>을 살펴보면, 『사송유취』에 주로 인용된 법전의 순서는 『경국대전』, 각종 수교, 『대전후속록』, 『경국대전주해』, 『대전속록』, 『대명률』 순이었다. 『경국대전』은 『사송유취』의 기본 틀이 되는 법전으로 그 인용이 많았고, 따라서 경국대전 법조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국대전주해』의 인용도 많았다. 『사송유취』의 편찬 목적인 소송 지침서로서 기능을 위한 현행 법령과 수교들이 다수 인용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각종 수교는 목개자로 표시된 개수 이외에 수교의 연월일 표시를 통해 총 46번 인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인용된 법전이 실제 『사송유취』에서 어떻게 인용되고 나열되었는지 다음의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2> 『사송유취』에 인용된 법전의 나열 순서

	
吏典-大明律-前續錄-受教 순서	吏典-註解-前續錄-後續錄 순서
전주 『사송유취』 고려대학교 대학원B7A16	

첫 번째, 「相避」 항목의 경우 『경국대전』 「吏典」의 조문을 吏典으로, 『대명률』은 大明律, 『대전속록』은 前續錄, 수교는 受教로 표시하여 인용하였다. 두 번째, 「免役」 항목은 『경국대전』 「이전」의 조문을 吏典, 그리고 이 조문에 대한 설명인 『경국대전주해』를 註解, 『대전속록』을 前續錄, 『대전후속록』을 後續錄으로 표시하여 인용하였다. 순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국대전』과 『대명률』의 조문들이 앞쪽에 놓이고, 다음으로 『대전속록』, 『대전후속록』의 조문들과 수교들이 실린다. 『경국대전주해』의 경우 『경국대전』 조문에 대한 설명이므로 항상 『경국대전』 조문 내용의 하위에 배치된다.

이처럼 『사송유취』는 『경국대전』이란 법전명의 표기 없이 바로 戶典, 刑典 등의 형식으로 수록되어 기본법전임이 뚜렷이 드러나며, 『대명률』은 大明律, 『대전속록』은 前續錄, 『대전후속록』은 後續錄, 『경국대전주해』는 註解라고 머리에 붙여 조문을 싣고 있다.

부록으로는 使孫의 범위와 그 우선순위를 표시하고 있는 <使孫圖>, 각 법전의 始用 연월일, 역대 공신의 칭호를 기록한 <功臣>, 중국의 연호와 황제의 재위 기간을 기록한 <大明年紀>, 조선의 왕호와 元年・在位年・昇遐年을 기록한 <本朝年紀>, 사송 사건의 처리 순서인 <聽訟式>, 동전이나 저화와 같은 화폐와 미・포와 같은 물품화폐의 환산기준에 관한 錢幣準用 등을 수록하였다. 이중에 <대명연기>와 <본조연기>는 『사송유취』 간행 및 필사 시기를 비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그리고 <사손도>와 <청송식>의 경우 김태정이 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법전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다. 특히 <청송식>의 경우 민사소송의 개시부터 심리,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기술하면서 심리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조목조목 정리하고 있다. 곧 민사소송 체계의 완성된 뼈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¹⁴⁾

14) 정금식, 임상혁(1999), 48.

3. 『詞訟類聚』 판본 현황과 특징

『사송유취』는 1585년(선조 18) 판본을 기준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은 4가지 판본이 현재 남아있다. 첫 번째 1585년 전주에서 간행된 『사송유취』 목판본, 두 번째 임란 이전 전주에서 간행된 『결송유취』 목활자본, 세 번째 간행처를 알 수 없는 『사송유취』 목판본, 네 번째 영천에서 간행된 『결송유취』 목판본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사송유취』 판본 종류

번호	관심제 ¹⁵⁾	판본	간행지	간행시기	비고	김백간 지칭 비교
1	詞訟類聚	목판	全州	1585년 (선조 18)	『사송유취』의 초간본 전라도관찰사 김태정이 간행	金侯某
2	決訟類聚	목활자	全州	[16세기 후반]	『결송유취』의 초간본 임진왜란 이전 전주에서 開刊된 목활자본	金侯某
3	詞訟類聚	목판	-	[17세기 초반]	『사송유취』의 중간본 17세기 거듭 간행됨	金侯伯幹
4	決訟類聚	목판	永川	1649년 (인조 27)	『결송유취』 목활자본을 대본으로 改刊한 목판본 발문 뒤 “徵贖” 항목 추가됨	金侯某

4가지 판본은 관심제가 『사송유취』와 『결송유취』로 나뉘지만 그 내용과 체제는 모두 동일하며, 발문 또한 동일하다. 판본의 차이는 목판인지 목활자인지, 간행지가 어디인지, 언제 간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 4가지 판본은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로 초간본과 중간본이 나뉘지기 때문에 먼저 전주를 중심으로 간행이 이루어 졌던 임진왜란 이전과 전주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 간행이 이루어진 임진왜란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5) 『사송유취』의 경우 본문 첫 장에 권수제가 제시되지 않고 바로 항목명인 ‘相避’로 시작된다. 따라서 표제가 『사송유취』가 아닌 『詞訟類抄』·『詞訟錄』·『古今一大案』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표에서는 판본의 정확한 구분을 위해 관심제를 기준으로 명칭을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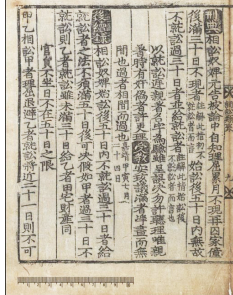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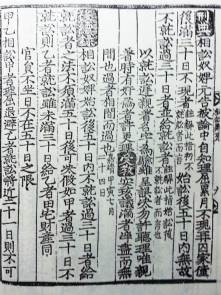
3.1 임진왜란 이전

3.1.1全州『詞訟類聚』

이 판본은 『사송유취』의 초간본으로 1585년(선조 18) 전라도관찰사 김태정이 전주에서 간행한 木版本이다. 이 판본은 이후 살펴볼 다른 판본들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판본이며, 발문 뒤 나타나는 간행참여자의 명단을 통해서 임란이전인 1585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585년 『故事撮要』의 책판목록 전주조에서 ‘詞訟類抄’가 나타난다.¹⁶⁾

형태사항은 木版本으로 1冊 34張, 四周雙邊, 匡郭 약 23.0×19.0cm, 有界, 11行 23字, 註雙行, 版心 半黑口, 上下2-3花紋魚尾, 전체 크기는 33.5×21.3cm이다. 현전하는 목판본은 대략 4점이다. 이중 실물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국 회도서관 소장이며 국립중앙도서관 복제본 1점, 고려대학교본 2점이다. 이 3점의 판본을 간행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전주 『사송유취』 목판본의 판본 비교

간행순서	①	②	③
소장처	고려대학교 대학원B7A16	日本國立國會圖書館 217-6	고려대학교 석주귀22
좌단 마멸 여부			
비고	목판 마멸 있음	①과 동일한 목판 ①보다 목판 마멸 더 있음	새로운 목판

16) 정형우, 윤병태, 『韓國의 冊版目錄』 (서울: 보경문화사, 1995), 99, 144.

3점 모두 <大明年紀>는 ‘萬曆元年癸酉’(1573, 선조 6), <本朝年紀>는 ‘元年戊辰’(1568, 선조 1)으로 동일하여 간행시기를 가늠할 수 없지만 목판의 마멸 정도에 따라서 간행순서를 비정할 수 있었다. 고려대학교본인 ①의 간행 시기는 책의 맨 앞장과 뒷장의 장서인인 [李浩然雪川亭]¹⁷⁾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데, 이 장서인의 주인은 李宜活(1573-1627)로 그의 字가 浩然이며, 號가 雪川이다. 이의활은 李彥迪의 손자이며, 1612년(광해군 4) 진사시에 입격하여 호조좌랑에 임명되었으며, 사헌부감찰을 거쳐 고령현감을 지냈다. 이후 개녕·용담현감을 지낸다. 1618년(광해군 10) 증광시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을 거쳐 함경도사를 역임하였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이후 홍해군수에 발탁되어 군수로 재직하면서 탐관오리의 부정을 근절하는 등 폐정을 바로잡고, 백성의 진휼에 밤낮으로 힘쓰다가 병을 얻어 관아에서 집무 중에 순직한 인물이다. 이의활이 언제 『사송유취』를 입수했는지 알 수 없으나 여러 번의 수령직을 거치는 사이 이 『사송유취』를 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①의 간행 시기는 인조대 이전일 것이다.

일본국회도서관본인 ②의 간행 시기 또한 장서인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장서인은 모두 6종으로 장방형인 [桑名文庫], [白河文庫]의 장서인, 장방형의 [明治九年文部省交付], [立教館圖書印]의 도장, 사각형인 [東京大學圖書之印], [東京大學濃理文三學部圖書] 등이다. 이중 [桑名文庫]과 [白河文庫]은 일본 에도시대의 정치가 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 1758-1829)의 장서인이다.¹⁸⁾ 따라서 ②가 일본으로 건너간 시기는 18세기 후반 전후일 것이며, 간행은 그 이전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②는 다른 본과 달리 <決訟指南目錄>이라는 목차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 또한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추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상의 판심제는 <詞訟類聚>인데 반해 이 목차의 판심제만 <決訟指南目錄>으로 나타나며, 앞에서 언급한 장서인은 모두 이 목차에 적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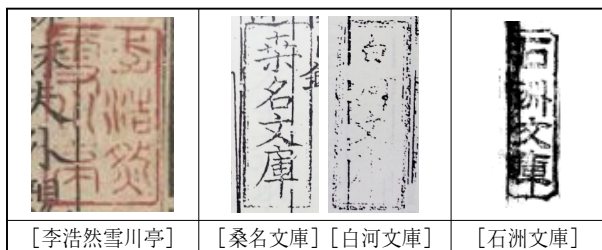
고려대학교본인 ③에 나타나는 장서인은 [石洲文庫]이다. 이는 石洲 李相龍

17) 구자훈, “朝鮮朝의 藏書印・藏書家 研究: 고려대학교 소장본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160.

18) 五月女肇志, “國立國會圖書館所藏『明月記』,” 『明月記研究 5号: 記録と文學』(明月記研究会編, 2011), 79.

(1858-1932)의 장서인으로 독립운동가인 이상룡의 생가인 임청각의 장서이다.
③의 목판은 앞의 ①, ②와는 다른 새로운 목판으로 ①, ②의 목판을 대본으로 한 번각본으로 보인다.

<표 5> 전주 『사송유취』 목판본의 장서인



이상의 판본을 살펴본 결과 전주 詞訟類聚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문 첫머리에 김백간을 ‘金侯某’로 표현하였다. 발문의 첫머리는 정엄의 발문으로 그의 문집인 『晚軒先生文集』에 수록된 「司訟錄跋」에서는 첫머리를 ‘金侯伯幹, 於事不放過’라고 시작한다. 그러나 이 판본은 김백간의 이름을 피휘하여 ‘金侯某’라고 새겼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金侯某’의 ‘某’가 2자 자리에 1자를 넣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의 사진을 통해 살펴보자.

<표 6> 전주 『사송유취』의 ‘金侯某’ 부분



이는 본래 ‘金侯伯幹’의 ‘伯幹’이 들어갈 2자 자리에 ‘某’를 끼워 넣은 것으로 처음에는 ‘伯幹’이라고 새겼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를 지우고 ‘某’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이 판본을 간행한 주체자인 김태정이 자신의 아버지인 김백간의 이름을 避諱한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이 판본 이후에 간행되는 중간본 『사송유취』에서는 김백간의 이름을 피휘하지 않고 본래 정염의 발문에 쓰인 대로 ‘金侯伯幹’이라고 나타난다.

둘째, 발문 뒤에 목판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기재된 명단을 나열하면 “嘉善大夫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金泰廷, 承議郎守全羅道都事 沈友正,¹⁹⁾ 通政大夫守全州府尹全州鎭管兵馬節制使 南彥經,²⁰⁾ 朝散大夫行全州府判官全州鎭管兵馬節制都尉 崔夢臣, 書寫營吏光州金德龜, 校正全州貢生金得龍, 金廷美” 등 모두 7명이다. 이들의 관계는 간행 주체인 전라도 관찰사 김태정과 그의 예하에 있는 전라도도사 심우정, 그리고 김태정으로 부터 간행을 부탁받은 전주부윤 남언경과 그의 예하에 있는 전주부판관 최몽신, 실제로 글씨를 쓴 전라감영의 서리 김덕구와 교정을 한 전주의 교생 김덕룡·김정미이다. 이 발문 뒤 명단은 이후 중간본 『사송유취』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이후 목활자본 『결송유취』와 이를 대본으로 간행된 영천 『결송유취』에서는 김태정·심우정·남언경·최몽신 4명만이 실려 있다.

셋째, 후대에 간행된 다른 판본보다 완성도가 높다. 이후 간행되는 중간본 『사송유취』에 비해 목개자의 탈락이 전혀 없으며, 오자 또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전주 『사송유취』는 1585년 간행된 『사송유취』의 가장 빠른 초간본이며, 이후 간행되는 판본들은 모두 이 전주 목판본을 대본으로 답습하며 간행된 것들이다. 다만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은 「聽訟」 항목의 後續錄 인용부분의 한 글자 ‘一’이 빈칸으로 비워져 있다. 이는 뒤에 중간본 『사송유취』 특징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

19) 沈友正(1546-1599): 본관 청송, 자 元擇. 1576년(선조 9) 진사가 되었다. 1583년 별시문과에 장원, 전직·형조좌랑을 거쳐 지평·정언, 호조·예조·형조·공조의 좌랑, 全羅道都事·海運判官 등을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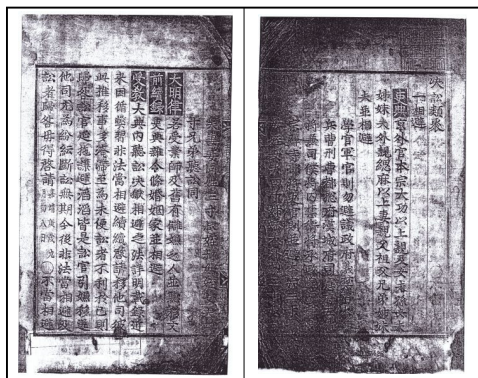
20) 南彥經(1546-?): 본관 의녕, 자 時甫, 호 東岡. 화담 徐敬德의 문인이다. 개국공신인 南在의 후손으로 1566년(명종 21) 學行으로 천거되어 砥平縣監에 기용되었다. 1573년(선조 6)에는 楊州牧使를 지냈다. 지평·장령을 거쳐 전주부윤이 되었다.

보도록 하겠다.

3.1.2 木活字本 『決訟類聚』

이 판본은 전주 『사송유취』와 내용면에서 서로 동일하며, 다른 점은 본문 첫줄에 ‘決訟類聚’라고 권수제를 명시한 것과 판심제가 ‘決訟類聚’로 바뀐 점, 각 항목명 앞에 순서를 표시하는 숫자가 붙은 점, 그리고 목활자를 심으면서 전주 목판본에서는 없었던 글자의 오류가 나타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결송유취』에 대해서 永川에서 改刊된 목판본만이 언급되어왔다. 전주에서 開刊된 목활자본인 『결송유취』는 현재 계명대학교본 1점이 남아있다.²¹⁾ 형태사항은 木活字本, 1冊 47張, 四周雙邊, 匡郭 26.0×17.8cm, 有界, 11行18字, 註雙行,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전체크기는 35.8×22.5cm이다.

<표 7> 목활자본 『결송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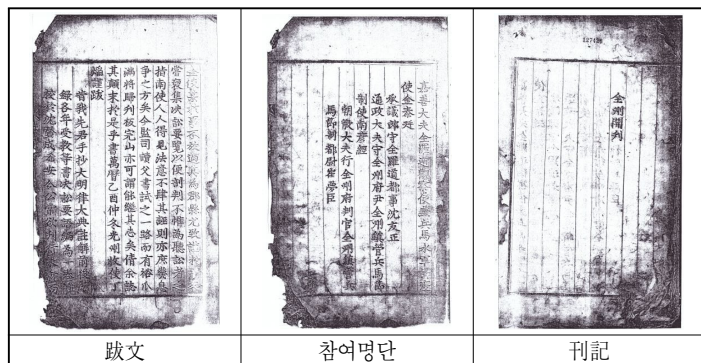


跋文의 내용은 『사송유취』와 동일하며, 그 다음 장에 “嘉善大夫全羅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金泰廷, 承議郎守全羅道都事 沈友正, 通政大夫守全州府尹

21)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349.14-김백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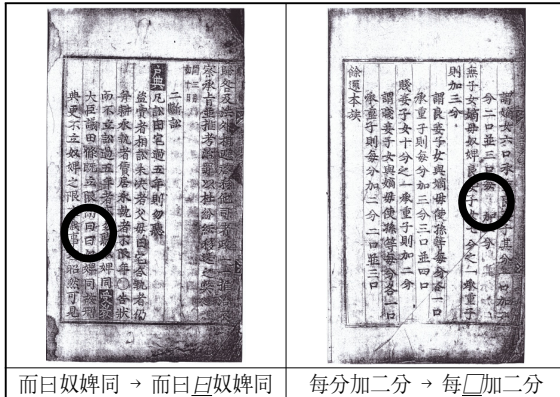
全州鎭管兵馬節制使 南彥經, 朝散大夫行全州府判官全州鎭管兵馬節制都尉 崔夢臣.” 4명의 인물이 나열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전주 『사송유취』에서 보였던 인물들로 목판본에서 나타난 書寫와 校正을 제외한 인물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장에는 ‘全州開刊’이란 刊記가 있다. 이를 통해서 이 목활자본이 전주에서 찍혔음을 알 수 있다. <大明年紀>는 ‘萬曆元年癸酉’(1573, 선조 6)까지, <本朝年紀>는 ‘元年戊辰’(1568, 선조 1)까지 기록되어 있어 전주 『사송유취』와 동일하다.

<표 8> 목활자본 『결송유취』 跋文, 참여명단, 刊記



목활자본 『결송유취』는 활자본이기 때문에 이전의 전주 『사송유취』에 비해 구성이 정형화되고 어미의 문양도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체계적으로 정돈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刑典, 前續錄 등의 법조항의 대문과 주를 구분하는 행의 높낮이가 전주 목판본보다 더 일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목판본을 목활자본으로 바꾸면서 오자가 많이 생겨났다. 약 18건의 오자를 확인했는데 이 오자는 이후 간행되는 영천 『결송유취』에서 수정된다. 물론 목활자본 『결송유취』에서 수정·보완된 글자가 있지만 약 1건으로 오자에 비해 그 수가 미비하다. 이 한 건은 전주 『사송유취』에서 「聽訟」 항목의 後續錄 인용부분의 한 글자가 비워져 있었는데, 이것을 ‘一’로 채워 넣었다.

<표 9> 목활자본 『결송유취』의 오자



그렇다면 목활자본 『결송유취』의 간행 시기는 언제인가. 전라도관찰사 김태정을 중심으로 전주부에서 『결송유취』 목활자본을 개간한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 전주에서 목활자본을 간행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김태정을 중심으로 전주부에서 목활자본을 개간했다면 이는 전주 『사송유취』와 간행시기가 겹치게 된다. 따라서 『사송유취』를 목판본으로 간행하고 이후 『결송유취』를 목활자본으로 개간했다는 가설이 세워진다. 전라도관찰사 김태정의 재임기간은 1585년(선조 18) 5월-1586년(선조 19) 2월로 거의 10개월가량이다. 34장의 『사송유취』 목판본을 개간하는데 걸린 시기는 얼마일까.²²⁾ 발문을 작성한 동짓달 이후 남은 재임기간은 대략 3개월인데 이 사이에 목활자본을 개간했을까. 만약 찍었다면 그 간행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16세기 중후반까지 비슷한 종류의 사송법서 곧 소송지침서들이 여러 사람들에

22) 예를 들어 남원 朔寧崔氏家에 소장된 1745년 『巡使道勸學節目謄書冊』에 나오는 『警民篇』의 경우 1745년 完營에서 刊行하는데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예조의 關이 접수된 2월에는 전라감영에 경민편이 있지 않아 이를 영남에서 찍어와 완영에서 개간하고 이제 배포를 위해 교육기관에 關을 내리는 것이 7월말이다. 따라서 54장의 경민편 목판본을 개간하는데 걸린 시기는 최대 6개월이다(규장각 소장 一簣古 340.0951-G421gb, 一簣古 340.0951-G421gc, 一簣古 340.0951-G421gd: 乙丑(1745년)六月 完營刊行).

의해 만들어졌는데 김백간의 『사송유취』가 간행된 이후 사송법서는 모두 김백간의 『사송유취』·『결송유취』로 통일화되는 듯하다. 이는 다른 사송법서와는 달리 『사송유취』가 수령직을 수행했던 김백간에 의해 저술되었고, 그 간행에 전주와 광주·의 관찰사 및 수령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송법서보다 공신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양상은 이후 1649년(인조 27) 영천에서의 改刊된 『결송유취』 목판본과 1707년(숙종 33) 의령에서 증보 개간되는 『결송유취보』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3.2 임진왜란 이후

3.2.1 중간본 『詞訟類聚』

이 판본은 木版本으로 1冊 34張, 四周雙邊, 半葉匡郭 약 23.0×19.0cm, 有界, 11行 23字, 註雙行,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전체크기는 약 31.0×22.0cm이다. 현전하는 목판본은 대략 15점이다. 이중 실물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립중앙도서관본 1점, 규장각본 3점, 장서각본 1점이다. 이 5점의 판본을 간행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중간본 『사송유취』의 판본과 연대 비교

간행순서	소장처 및 청구기호	大明年紀	本朝年紀	비고
①	국립중앙도서관 B2古朝34-11	萬曆元年癸酉 (1573, 선조 6)	元年戊辰 (1568, 선조 1)	사손도 이하의 목판 마멸 있음
②	규장각 奎11491	萬曆元年癸酉 (1573, 선조 6)	元年戊辰 (1568, 선조 1)	①과 동일한 목판 ①보다 사손도 이하의 목판 마멸 심함
③	장서각 K2-3423	康熙元年壬寅 (1662, 현종 3)	元年己亥 (1659, 효종 9, 현종 즉위년)	①, ②와 동일한 목판+보판 보판 중 사손도 이하의 모두 보판
④	규장각 奎11490	康熙元年壬寅 1662년(현종3)	元年己亥 (1659, 효종 9, 현종 즉위년)	①, ②, ③과 동일한 목판 ③보다 전체적으로 조금 더 마멸 있음
⑤	규장각想白古 340.0951-G414s	康熙元年壬寅 1662년(현종3)	顯宗元年庚子 (1660, 현종 1)	새로운 목판

국립중앙도서관본인 ①은 <大明年紀>에 필사로 황제의 나이가 기록되었고, 목판으로 찍힌 ‘萬曆元年癸酉’(1573, 선조 6) 이외에 ‘崇禎元年戊辰’(1628, 인조 6)까지 필사하였다. <本朝年紀>에도 필사로 왕의 나이를 기록하였고, 이와 함께 왕의 陵 명칭·능 위치·忌日·先王과의 관계·立後관계, 王后의 기일 등을 필사하였다. 목판으로 찍힌 ‘元年戊辰’(1568) 이외에 ‘景宗元年辛丑’(1721)까지 필사하였다. 이를 통해 ①은 경종대 이후까지 읽혔던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본인 ②는 ①과 동일한 목판으로 이전에 ①에서 이미 마멸이 심했던 사손도 이하의 부분이 더욱 마멸이 심하다. 장서각본인 ③은 ①, ②와 동일한 목판으로 보판이 7-8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중 사손도 이하의 목판 5개는 모두 보판이다. 이는 이전에 ①, ② 목판에서 사손도 이하의 목판 마멸이 심하였기 때문에 보판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판 부분의 <대명연기>와 <본조연기>가 ①, ②와 다르다. 보판이 된 시기는 대략 ‘康熙元年壬寅’인 1662년(현종 3)을 전후한 시기로 보인다.

규장각본 ④는 ①, ②, ③과 동일한 목판이며, ③보다는 이후에 찍힌 것으로 보인다. 목판의 마멸 정도와 자획의 탈락 정도가 ③보다 심하다. 규장각본인 ⑤는 이전의 목판과는 다른 새로운 목판으로 이전보다 법전의 출전을 표시하는 목개자의 탈락이 더 자주 나타나며²³⁾ 역대 공신의 칭호를 추가로 더 넣었다.²⁴⁾ 또한 <大明年紀>는 명나라 연호와의 구별을 위해 청나라 승덕 이후에는 3칸을 내려서 기재하였다. <本朝年紀>는 현종의 승하연도인 1674년(현종 15)까지 기재되었다. 따라서 ⑤는 현종 사후인 1674년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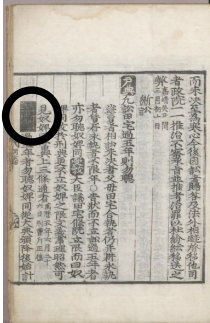
이상의 판본을 살펴본 결과 중간본 『詞訟類聚』 목판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전의 출전을 표시하는 목개자가 본문에서 탈락된 곳이 있다. 「斷訟」 항목의 왼쪽 상단에 ‘■■■■過五年者’로 간행된 부분은 본래 前續錄이 기재되어야 하며, 「驛路」 항목의 첫 부분에 ‘□□□各驛馬位田’인 부분은 본래 後續錄이

23) 이전 ①, ②, ③, ④에서는 5군데로 나타나던 목개자 탈락이 ⑤에서는 8군데로 늘어난다.

24) 이전 ①, ②, ③, ④에서는 ‘太祖朝開國-中宗朝靖國·靖難’까지 기재되었는데, ⑤에서는 ‘中宗朝靖國·靖難’ 이후에 ‘宣祖朝光國·平難·扈聖·宣武·清難’과 ‘仁祖朝靖社·振武·昭武·寧社·寧國’까지 기재되어 있다.

기재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斷訟」 항목의 ‘■■■■以三十六朔爲限’의 前續錄 표시, 「聽訟」 항목의 ‘■■■■公私賤娶’의 賤娶婢產 표시, 「贖身」 항목의 ‘□□□宗親賤妾子女’의 後續錄 표시 등 총 5군데의 목개자가 탈락되었다.²⁵⁾

<표 11> 중간본 『사송유취』 목개자 탈락 부분

	
왼쪽 상단 ■■■■(前續錄) 규장각奎11490	중앙 상단 □□□(後續錄) 규장각奎11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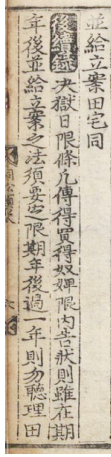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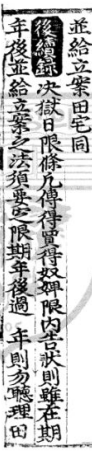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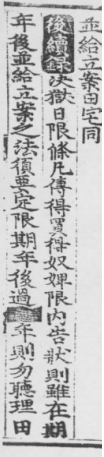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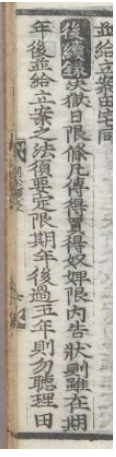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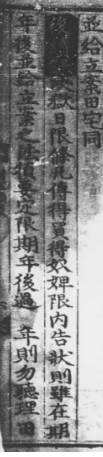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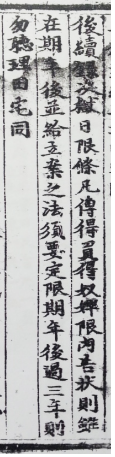
둘째, 「聽訟」 항목의 後續錄 인용부분의 한 글자가 본래 후속록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다. 인용된 후속록의 본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決獄日限條, ‘凡傳得買得奴婢, 限乃告狀, 則雖在期年後, 并給立案之法.’ 須要定限. 期年後一年, 則勿聽理, 田宅同.

해석: 『經國大典』 「刑典」의 決獄日限條에 “모든 전득노비와 매득노비를 기한 내에 관에 신고한 것이면 비록 期年이 지난 뒤라도 모두 입안(증명서)을 발급한다.”는 법은 마땅히 일정한 기한이 있어야 한다. 期年 이후 1년이 경과한 것은 처리하지 말라. 田地와 家屋도 같다.

25) 규장각본인 ⑤는 5군데 이외에 「斷訟」 항목에 ‘□□田宅條’의 ‘前續錄’, 「偽造」 항목의 ‘□□□偽造文記’의 ‘後續錄’, 「公賤」 항목에 ‘□□公賤有流亡者’의 ‘刑典’ 등 3군데가 더 나타난다.

<표 12> 『사송유취』의 후속록 ‘一’ 부분의 변화

전주 『사송유취』	전주 『사송유취』	중간본 『사송유취』	중간본 『사송유취』	중간본 『사송유취』	『청송지남』
					
—26)	□	■	五	□	三27)
고려대학교 대학원B7A16	고려대학교 석주貴22	규장각 奎11491	규장각 奎11490	규장각 想白古	규장각 古5125-48

본래 후속록에서는 期年 이후 1년이 경과하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처리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중간본 『사송유취』는 ‘期年後一年, 則勿聽理.’ 부분에서 ‘一’을 처음에는 ‘■’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五’로 기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사송유취』와 동일한 계열로 알려진 『청송지남』²⁸⁾에서는 ‘一’을 ‘三’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주 『사송유취』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마도 후속록에서는 1년이라는 기한을 설정하였지만 현실에서는 3-5년 정도의 權道가 있던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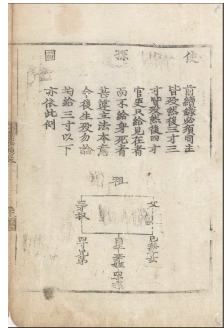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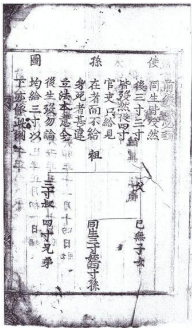
26) 본래 □ 빈칸이었던 것을 ‘一’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27) 본래 □ 빈칸이었던 것을 ‘三’으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28) 규장각 소장 古5125-48.

셋째, <使孫圖> 삽도에 계선이 있으며, 8행7자의 설명이 있다. 다른 판본의 경우 사손도 삽도에 계선이 없으며, 전주 『사송유취』는 9행 7-6자, 목활자본 『결송유취』와 영천 『결송유취』의 경우 10행5자로 차이를 보인다.

<표 13> 『사송유취』와 『결송유취』의 사손도

전주 『사송유취』	목활자본 『결송유취』	증간본 『사송유취』
		
고려대학교 대학원 B7A16	계명대학교 349.14-김백간결	규장각 奎11490

넷째, 跋文 상에서 김백간을 ‘金侯伯幹’으로 칭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송유취』의 편자인 김백간의 성명은 이전에 전주 『사송유취』와 목활자본 『결송유취』에서는 피휘하여 ‘金侯某’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전주에서 김태정의 주도하에 『사송유취』를 간행했을 때는 김태정이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피휘하여 ‘金侯某’라고 작성하였지만 전주가 아닌 다른 지역과 시대에 증간본 『사송유취』가 간행되면서부터는 김백간의 성명을 모두 제시하여 ‘金侯伯幹’으로 기재한 것이다.

<표 14> 중간본 『사송유취』 ‘金侯伯幹’ 부분

규장각奎11491	규장각奎11490	규장각 想白古

다섯째, 발문 이후 간행시기, 간행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로 인해 중간본 『사송유취』의 간행연도와 간행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간행시기는 부록의 <대명연기>와 <본조연기>를 통해서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이며, 간행지는 더욱 유추하기 어렵다. 다만 이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조선 후기의 서목인 『冊版置簿冊』, 『嶺湖邑列所在冊板目錄』, 『完營冊版目錄』에서는 전주조의 『사송유취』 대신에 광주조의 『사송록』만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²⁹⁾ 광주조의 『사송록』을 『사송유취』로 추정하였다. 그 이유는 정염이 작성한 『사송유취』의 발문 제목이 ‘사송유취발’이 아닌 ‘사송록발’이라는 점에서 『사송유취』를 『사송록』으로 보아도 무방하며, 또 전주의 『사송유취』 책판이 광주목사였던 정염과의 관련성 때문에 16세기 후반 이후에 광주로 이동된 것인지, 아니면 전주의 『사송유취』를 저본으로 광주에서 번각하거나 새롭게 간행한 것인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³⁰⁾

이를 통해 추측해 본다면, 1585년 『사송유취』는 처음 발문을 작성한 정염과 김태정을 통해 전라도관찰사인 김태정은 전주에서, 광주목사인 정염은 광주에서

29) 정형우, 윤병태(1995), 348, 542, 648.

30) 김소희(2015), 369.

각각 간행되었고, 이후 전주의 『사송유취』 목판은 임진왜란 때에 유실되고, 광주에서 간행된 『사송유취』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남아있어 보판을 넣어가며 계속해서 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전해지는 『사송유취』의 판본은 대다수가 전주가 아닌 중간본 곧 광주에서 간행한 판본이 다수 남아있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판본은 전주 『사송유취』와는 달리 발문 뒤에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과 書寫者・校正者의 명단이 없고, 전주 목판본보다 목개자의 탈락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주 목판본의 초고본을 가지고 간행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할 사료가 아직 나오지 않아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중간본 『사송유취』가 언제쯤 찍혔을지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료는 규장각 소장 필사본인 『詞訟類抄』이다.³¹⁾ 이 필사본은 중간본 『사송유취』를 필사한 것으로 동일한 부분에 목개자의 탈락이 나타나며, 발문에서 김백간을 ‘金侯伯幹’으로 기록하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聽訟」 항목의 後續錄 ‘期年後一年, 則勿聽理.’ 부분에서 ‘一’을 정확히 기록하였고, <功臣>에서 ‘宣祖朝 光國・平難・扈聖・宣武・清難’과 ‘當代 靖社・振武・昭武・寧社’³²⁾ 부분, <大明年紀>에서 ‘崇禎元年戊辰’(1628, 인조 6)까지, <本朝年紀>에서 ‘宣祖元年戊辰 在位四十一年 萬曆三十六年 戊申昇遐’와 ‘光海元年己酉 在位十五年 天啓三年癸亥廢’(1623년, 광해군 15) 부분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이 필사본은 인조대에 필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광해군이 폐위된 이후인 인조대 초반일 것이다. 따라서 중간본 『사송유취』는 못해도 17세기 초 이전에 간행되었을 것이다.

3.2.2 永川 『決訟類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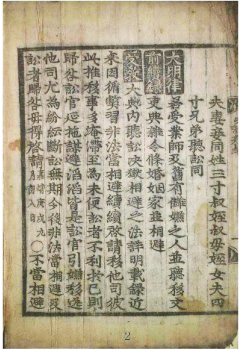
영천에서 개간된 『결송유취』는 앞서 살펴본 전주의 목활자본과 마찬가지로 『사송유취』와 내용면에서 서로 동일하다. 이 판본은 木版本으로 대략 7점 남아있

31) 규장각 소장奎1055.

32) ‘當代’는 仁祖代(인조재위기간: 1623-1649)를 말한다. 靖社(1623년, 인조 1)・振武(1624년, 인조 2)・昭武(1627년, 인조 5)・寧社(1628년, 인조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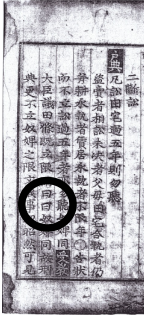
다. 이중 실물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립중앙도서관본 1점, 규장각본 1점이다. 이 2점의 판본을 간행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영천 『결송유취』의 판본 비교

간행순서	①	②
소장기관	규장각 古 5125-60	국립중앙도서관 BC古朝34-28
		
형태사항	1册(48張): 四周雙邊 匡郭 23.7×16.8cm,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花紋魚尾; 34.0×22.0cm	1册(48張): 四周單邊 匡郭 23.6×14.8cm,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花紋魚尾; 31.1×22.2cm
비고	전주 목활자본을 대본으로 간행	①을 대본으로 번각한 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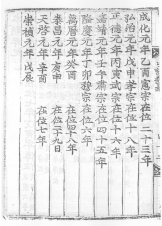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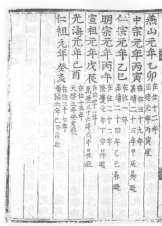
규장각본인 ①은 목활자본 『결송유취』를 대본으로 거의 비슷하게 간행한 판본이다. ①의 광곽 크기는 23.7×16.8cm이며, 계명대학교 소장 목활자본 『결송유취』의 광곽 크기는 26.0×17.8cm로 세로 3.7cm, 가로 1cm의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경상대학교와 계명대학교 소장의 다른 영천 『결송유취』의 반엽광곽 크기가 대략 23.5-6×17.6cm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목판본은 목활자본에 비해 가로보다는 세로로 3.7cm 정도 압축된 형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①은 목활자본 『결송유취』를 대본으로 改刊한 판본이다. 크기는 다르지만 그 글자체가 목활자본과 매우 유사하며 구조적인 체계는 거의 동일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첫 번째 목활자본 『결송유취』에서 나타난 목활자본의 오류를 수정하여 간행하였다.

<표 16> 목활자본 『결송유취』의 오류를 수정한 영천 『결송유취』

			
목활자본 『결송유취』	영천 『결송유취』	목활자본 『결송유취』	영천 『결송유취』
而曰 _口 奴婢同 → 而曰 _口 奴婢同		每 _口 加二分 → 每分加二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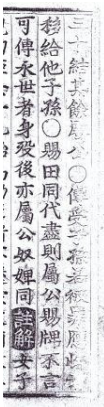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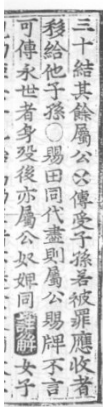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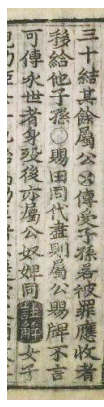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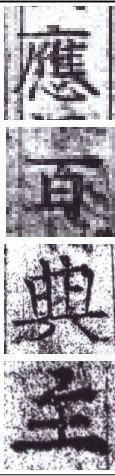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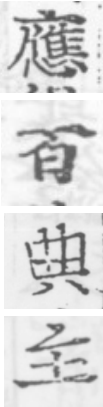
두 번째, 마지막장에서는 ‘己丑永川改刊’이란 刊記가 있다. 이는 기축년에 경상도 영천에서 개간한 것으로 그 시기는 1649년으로 생각된다. 또한 ①과 ②의 <大明年紀>는 ‘崇禎元年戊辰’(1628, 인조 6), <本朝年紀>는 ‘仁祖元年癸亥, 在位二十七年, 順治六年己丑昇遐’까지 새겨져있다. 인조의 승하가 1649년 기축인데 이 <본조연기>에 승하한 기축년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영천 『결송유취』는 인조 승하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부록으로 다른 판본과는 달리 ‘徵贖’이라는 항목 아래 筭 10부터 斬刑에 이르기까지 각각 형률에 대한 木綿의 贖錢, 곧 보석금을 수록하였다.

<표 17> 목활자본 『결송유취』와 영천 『결송유취』의 다른 점

			
刊記	大明年紀	本朝年紀	徵贖

국립중앙도서관본인 ②는 ①을 대본으로 번각한 판본으로 목활자본 『결송유취』와 달리 ①에서 나타나는 수정 사항과 기호·자형의 변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목활자본 『결송유취』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 기호가 ①에 나타나며, ②는 이보다 더 많은 ●, ◎, ⊕ 또는 물고기 모양 등의 기호 변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자형도 목활자본 『결송유취』를 대체로 모방하였지만 ①에서 변화된 자형이 ②에서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따라서 ②는 ①을 대본으로 번각한 판본이며, 간행 시기는 알 수 없다.

<표 18> 목활자본 『결송유취』와 비교한 영천 『결송유취』의 기호·자형 변화

전주 『결송유취』	①	②	전주 『결송유취』	①	②
					
○	⊗	⊗	應 / 百 / 典 / 主		

4. 수령의 『詞訟類聚』 활용 사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송유취』와 『결송유취』는 임진왜란 이후 계속해서 간행되고 재생산되었다. 임진왜란 이전 다른 다양한 사송법서, 곧 소송지침서들

이 있었음에도 『사송유취』와 『결송유취』가 중심이 되어 간행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에 『사송유취』와 『결송유취』가 국가적 · 공식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었는지는 알아 볼 수 있다. 첫 번째, 『續大典』 『刑典』의 私賤條에 “○使孫圖見決訟類聚”라고 하여 자녀 없이 죽은 어미의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하는지에 대한 법조항에서 그 상속의 대상이 되는 사촌 이내의 근친을 나타내는 <使孫圖>가 『결송유취』에 보인다고 명시하였다. 두 번째, 具允明(1711-1797)이 정조의 명에 따라 1786년(정조 10)에 각종 법률서와 법령을 종합 정리하여 정리한 책인 『典律通補』에도 『결송유취』가 인용되어 수록된 조문의 출처를 나타내는 주에 ‘決訟’이란 단어가 보인다. 이처럼 국가의 법전과 왕의 명령으로 만든 법전 모음집에 『결송유취』가 인용된 것으로 보아 『결송유취』는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소송지침서였을 것이다.

이외에도 현종 때의 『승정원일기』를 살펴보면, 1662년(현종 3)에 예조에서 繼後子의 奉祀와 관련된 1553년(嘉靖 32, 명종 8)의 受敎를 살펴볼 문서를 찾던 중 사송유취에 실린 ‘嘉靖癸丑四月受敎’를 살펴본 사례가 있다.³³⁾ 실제로 이 수교는 『사송유취』의 ‘立後’ 항목에 수록되어 있다.³⁴⁾

그렇다면 이렇게 간행된 『사송유취』와 『결송유취』는 수령들이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였을까. 실제 소송사건에서 수령들이 이 책을 참고하여 소송을 처리했다는 사례는 문헌상의 사료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속해서 간행되는 『사송유취』 계통의 판본들을 통해 책에 대한 수요가 있었음을

33) 『承政院日記』 顯宗3年 9月 17日 丁亥(1662).

“○又啓曰, 以禮曹繼後議大臣章記, 傳曰, 李領府事收議中, 嘉靖癸丑云者, 是何朝耶. 禮曹有可考文書事, 命下矣. 嘉靖癸丑, 卽明宗朝, 而可考文書, 問于禮曹, 則別無受敎可考處云. 而考諸詞訟類聚, 則嘉靖癸丑四月受敎內, 立嗣後生子奉祀, 則繼後子, 論以衆子, 毋得紛紜罷繼云云. 今此收議中所引者, 似是此條矣, 敢啓. 傳曰, 知道.”

34) 앞서 살펴본 중간본 『사송유취』 가운데 ‘장서각 K2-3423’ 경우 이전 판본에 보판을 추가하여 간행했고, 그 보판 부분의 <대명연기>와 <본조연기>가 앞서 간행된 판본과 다르므로, 보판이 된 시기가 대략 <대명연기>의 ‘康熙元年壬寅’인 1662년(현종 3)을 전후한 시기로 보인다고 하였다. 위의 『승정원일기』에서 1662년에 대신들이 『사송유취』를 상고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사례가 1662년을 전후로 보판된 중간본 『사송유취』의 간행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추구 연구가 필요하다.

알 수 있다. 『사송유취』와 『결송유취』가 수령의 소송 운영에 활용되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朴泰輔(1654-1689)의 경우, 『詞訟類聚』를 新修하고 지은 『新修詞訟類聚序』를 통해 1682년(숙종 8)에 伊川縣監으로 부임하여 『사송유취』를 읽었고, 彙分·編次가 좋지 않아 門目·條節을 세우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여 새로 『新修詞訟類聚』를 편찬한 것을 알 수 있다.³⁵⁾ 박태보가 편찬한 『신수사송유취』가 어떤 판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박태보가 이천현감으로 부임하여 『사송유취』를 읽었고, 이를 통해 옥사를 분별하고 판결하는 법례를 헛갈리지 않아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수령이 부임지에서 참고해야 할 법률서 중 하나로 『사송유취』와 『결송유취』가 언급되고 있다. 정약용은 『牧民心書』 『赴任六條』의 上官에서 수령은 백성을 다스릴 방도를 생각해야 한다며 참고해야 할 책들을 나열하는데, 그중에 법률서에서 “『經國大典』·『受教輯錄』·『決訟類聚』·『無冤錄』·『種德篇』·『疑獄集』 등의 책을 가지고 일에 앞서 연구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결송유취』를 언급하고 있다.³⁶⁾ 이는 수령은 지방의 법관으로 소송을

35) 『定齋集』 卷之四 「新修詞訟類聚序」.

“我朝典令大典及前後續錄，綱條略備，聽訟家尙嫌門類之不專。金伯幹所編詞訟類聚，實負虎面庭者之捷徑要訣，不可少也。余初受任伊川，不閑吏事，間得此書而讀之，雖獄情辨決係所聽之明暗，至於法例，自謂不迷，皆其助也。獨其爲書，彙分失類，編次無序，考閱之際，頗有所妨，瑕之掩瑜，有足惜者。今輒不揆僭猥，稍加厘改，更立門目，移易條節。其或散漫不關於詞訟者刪去之，亦有添載一二條之見遺者，本述舊文，頓成新本。非敢強作聰明，以分昔人之美。徒以愛重其書，欲其完美。以終惠於後人，至於近數十年來，列聖教命爲今日章程者，不爲不多，而今不暇一二蒐編，安知後之無能繼此者。上之九年癸亥。潘南朴泰輔識。”

36) 『牧民心書』 卷一 「赴任六條」.

“○上官【赴任 第五條】參謁既退，穆然端坐，思所以出治之方。寬·嚴·簡·密，預定規模，唯適時宜，確然以自守。『治縣訣』云：“君子臨民，當先取吾性度之所偏處，矯揉之。柔懦者，以強矯之，懶慢者，以勤矯之，偏於剛者，以寬大矯之，偏於緩者，以威猛矯之。”必取丘濬『大學衍義』，趙善瑒『自警編』，薛文清『從政錄』等書，其嘉言善行，心所悅服者，常常紬繹，反覆體行，以澄其本源。又以『大典』·『受教輯錄』·『決訟類聚』·『無冤錄』·『種德篇』·『疑獄集』等書，先事研究，皆可以得力。古人教人醫術，使每日平明，先讀『孝經』·『論語』，亦此義也。”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부임에 앞서 먼저 법률서를 연구하도록 한 것이며, 이때 소송지침서인 『결송유취』가 포함된 것이다.

세 번째, 『사송유취』와 『결송유취』가 각 지방관청의 치부기록인 重記에 기록된 경우가 있다.³⁷⁾ 중기는 각 관청마다 보유한 물품의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마다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며 관리 교체시 解由를 위한 인수인계의 문서이다.³⁸⁾ 아래의 표를 보면 대부분 刑房이 관리하는 書冊秩에서 『사송유취』와 『결송유취』가 나타나며, 이는 수령과 함께 소송 처리에 참여하는 형방의 형리가 참고하였거나 수령이 이 법률서를 참고할 수 있도록 형방에서 보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형방의 서책질에는 『사송유취』와 『결송유취』 이외에 『대명률』·『경국대전』·『전후속록』·『수교집록』·『무원록』·『고사촬요』·『대전통편』 등도 함께 기록되고 있었다.

<표 19> 重記에서 나타나는 『사송유취』와 『결송유취』

번호	작성연도	문서명	작성지	항목명	내 용
1	1859년 (철종 10)	『萊府重記』	東萊府	紙筒庫書冊秩	- 詞訟類聚, 壹卷. - 決訟類聚, 貳卷內, 壹卷己卯甲申八月以前無在, 壹卷禮房授.
2	1871년 (고종 8)	『洪等內重記』	永川郡	刑房의 書冊秩	- 決訟類抄, 壹卷, 破不用.
3	1889년 (고종 26)	『官中各處重記』	玄風縣	刑房 金世洪	- 詞訟類聚, 壹卷. - 決訟類聚, 壹卷.
4	1887년 (현종 15)	『官中各都處重記』	龍宮縣	刑房色	- 決訟類聚冊, 壹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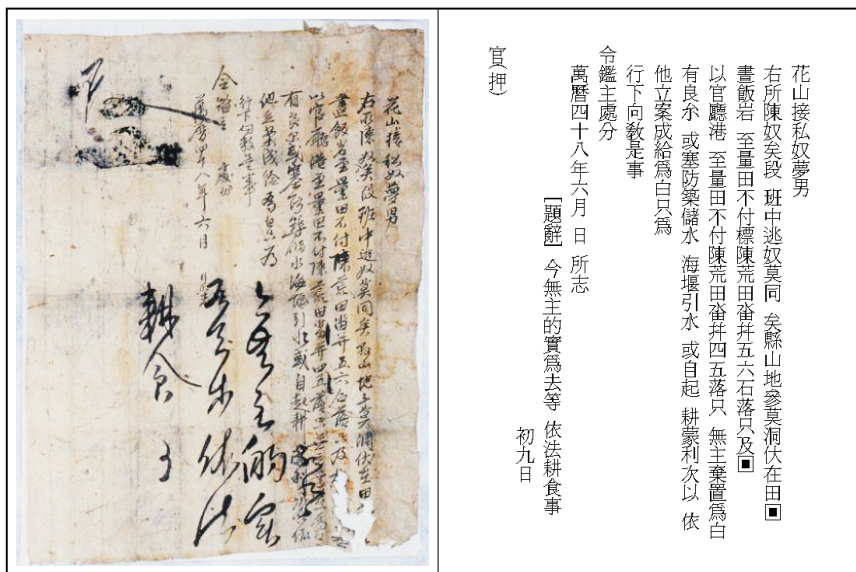
이상 『사송유취』가 수령의 소송 운영에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박태보의 서문과 정약용의 수령 부임 과정, 관청의 중기를 통해서 수령이

37) 영남문화연구원, 『重記 I』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9), 498-499. ; 영남문화연구원, 『重記 II』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9), 69, 226, 310.

38) 영남문화연구원, 『重記 II』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9), 14(남권희·최우경의 해제 『嶺南地域 重記資料 研究』 중).

『사송유취』를 읽기 중에 읽고, 소송에 참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수령이 『사송유취』를 참고하여 소송 및 청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유추해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문서는 1620년(광해군 12) 私奴 夢南이 海南縣에 올린 청원서인 所志이다.³⁹⁾

<표 20> 1620년 私奴 夢南의 所志



청원서의 내용은 사노 몽남이 주인 없이 버려진 황무지를 耕食하기 위해 立案을 발급해 줄 것을 해남현에 요청한 것이다. 이 청원서를 접수받은 해남현에서는 “지금 주인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법에 따라 경식하라.”라고 처분[題辭]을 내렸다. 이때 ‘법에 따라[依法]’는 『經國大典』 ‘戶典’ 田宅條의 ‘○過三年陳田, 許人告耕’과 ‘○無主田, 移給他人’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조목은 『詞訟類聚』의 ‘聽訟’

3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3: 해남윤씨편 영인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15.

항목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법 조항을 찾아볼 때 항목에 또 항목으로 들어가서 찾아야 하는 육전체제의 법전을 볼 것인가 아니면 소송과 관련된 조항만을 뽑아 정리한 법전을 볼 것인지는 사용자의 선택이겠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책을 더 자주 찾아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런 면에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소장을 처리하는 수령에게 필요한 법전은 해당 사항을 간편하게 찾아서 참고할 수 있는 『사송유취』와 같은 소송지침서일 것이다.

5. 맺음말

소송지침서, 곧 사송법서의 간행물 중 가장 많이 유통된 『사송유취』를 중심으로 그 판본의 현황과 특징을 통해 간행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수령의 활용 사례를 통해 『사송유취』의 공신력과 당시 수령들이 『사송유취』를 읽고, 참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송유취』는 1585년 전주에서 김태정에 의해 목판본으로 간행된 이래 임진왜란 이전 전주에서 또 목활자본 『결송유취』로 간행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간행지는 알 수 없으나, 전주 『사송유취』와는 별개의 판본이 여러 차례 보판을 넣어가며 간행되었다. 그리고 목활자본 『결송유취』를 대본으로 간행된 영천 『결송유취』도 간행되었다. 이들 판본에 대한 간행 시기는 사료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문의 藏書印, <大明年紀>, <本朝年紀>, 刊記 등을 통해 유추하였을 뿐이다. 이와 함께 『사송유취』가 국가의 법전과 왕의 명령으로 만든 법전 모음집에 인용된 것으로 보아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소송지침서였음을 알 수 있었고, 박태보의 서문과 정약용의 수령 부인, 관청의 중기를 통해서 수령이 『사송유취』를 읽기 중에 읽고, 소송에 참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사송유취』는 1585년 『사송유취』가 간행된 뒤 『결송유취』와 『決訟類聚補』가 뒤이어 간행되었다는 간단한 흐름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사송유취』의 경우 標題의 변화만으로 간행의 변화를 추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간행된 횟수도 많았고 판본 또한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후 『사송유취』가

처음 간행되기 전에 영향을 받은 다른 책이나 판본과 간행되고 변이되어 재생산된 판본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참고문헌>

[논문 및 저서]

- 구자훈. “朝鮮朝의 藏書印・藏書家 研究: 고려대학교 소장본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 남권희, 진유라, 강유현. “조선후기 동래부의 『萊府重記』에 수록된 기록물 분석.” 『서지학연구』 제60집(2014. 12). 245-286.
- 김소희. “조선전기 전라도의 출판문화 연구.” 『서지학연구』 제62집(2015. 6). 357-392.
- 김재문. “조선왕조의 민(형)사소송법전(사송유취).” 『재산법연구』 제8권(1991. 12). 35-53.
- 김재문. “조선왕조의 소송법전(사송유취).” 『재산법연구』 제11권(1994. 12). 87-130.
- 법제처 편. 『(原新補)受教輯錄・詞訟類聚』. 법제처, 1964.
-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大典續錄・大典後續錄・經國大典註解』.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 연정열. “사송유취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논문집』 20집(1996). 47-58.
- 영남문화연구원. 『重記 I・II』.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9.
- 옥영정. “호남지방 목활자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2.
-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제50집(2011. 12). 433-470.
- 정공식, 임상혁. 『十六世紀詞訟法書集成』.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9.
- 정공식. “법서의 출판과 보급으로 본 조선사회의 법적 성격.” 『서울대학교법학』 제48권(2007. 12). 88-123.

정공식, 조지만, 다나까 토시미쯔. 『잊혀진 법학자 신변 - 譯註 大典詞訟類聚』.

서울: 민속원, 2012.

정형우, 윤병태. 『韓國의 冊版目錄』. 서울: 보경문화사, 1995.

조선총독부증추원. 『(註校)大典會通』. 보경문화사, 200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편. 『韓國學資料叢書八 - 決訟

類聚補』.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웹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http://history.go.kr>>.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 <<http://lib.aks.ac.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korcis>>.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